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7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7.

발 의 자 : 이수진·이정문·박상혁
우상호·주철현·정태호
신현영·김주영·김두관
양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음지도 작성 근거는 현재 임의조항으로,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성기준·방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. 이에 실제 소음지도의 활용을 위해서 포함될 필요가 있는 정보가 표기되지 않고 있어,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, 인구 50만(면적이 1천 m^2 이상인 경우에는 30만) 이상인 대도시인 경우 또는 연간 기차·자동차·전차 등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

게 소음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.

또한,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소음피해의 저감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주요 소음원, 거주인구 및 공동주택과 학교·의료기관 현황, 소음지도 관할 관청 등의 정보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).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, “공개할 수 있다”를 “공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
2. 연간 교통기관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
3. 그 밖에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

한다.

1. 소음의 정도 및 주요 소음원
 2. 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
 3. 거주인구, 공동주택 및 학교·의료기관 현황
 4. 소음지도 관할 관청
 5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, 소음·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
 6. 그 밖에 소음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
- ④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시·도지사는 그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음지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제3항·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소음지도의 작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소음지도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·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.</u> 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8 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에 해 당하는 지역 2. 연간 교통기관의 교통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3. 그 밖에 소음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<u>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 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</u>
<u><신 설></u>	

<u><신 설></u>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<u>제1항</u>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<u>공개할 수 있다.</u> ③ 환경부장관은 <u>제1항</u>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·도지사에게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·운영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	<u>명시하여야 한다.</u> <u>1. 소음의 정도 및 주요 소음원</u> <u>2. 소음 측정지점의 위치정보</u> <u>3. 거주인구, 공동주택 및 학교</u> <u>· 의료기관 현황</u> <u>4. 소음지도 관할 관청</u> <u>5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, 소음</u> <u>· 진동 방지시설 설치계획</u> <u>6. 그 밖에 소음지도에 필요하</u> <u>다고 판단되는 정보</u> ④ <u>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를</u> <u>작성한 시·도지사는 그 내용</u> <u>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</u> <u>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</u> <u>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</u> <u>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⑤ ----- ---<u>제1항 또는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<u>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⑥ -----<u>제1항 또는 제</u> <u>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